

# 이사회 운영 규정

제 정 : 1998. 7. 7

개 정 : 2005. 3.28

2010.11. 1

2022. 5. 4

코오롱이앤피 주식회사

# 이사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코오롱이앤피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,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2장 구 성

### 제 4 조 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### 제 5 조 (의장)

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
## 제3장 회 의

### 제 6 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정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 전원의 삼 분의 일 이상의 자로부터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.
-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10 조 (부의사항)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[별표(1)]로 이를 지정한다.

#### 제 11 조 (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항)

- ① 회사가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 거래의 경우 연초에 1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의 10% 미만인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 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.
- ③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#### 제 12 조 (위 임)

- 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 사에게 해당 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.

#### 제 13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한다.
 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제 14 조 (긴급집행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,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사전 집행하고 최단 시일 내에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전①항의 경우 이사회가 긴급집행 사항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

조치는 그 시간 이후의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**제 15 조 (감사의 출석)**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 15 조의 2 (관계인의 출석)**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 16 조 (의사록)**

- ① 이사회 의사내용 및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비치한다.
- ②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**제 17 조 (간사)**

- ① 이사회원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(경영기획담당 부서장)이 되며,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지원을 담당한다.

**제 18 조 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한다.



[별표1]

## 이사회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

부의안건 및 보고사항	관련 근거	위임여부		
		사전 승인	위임	보고
<b>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</b>				
(1) 주주총회의 소집	상법362조	○		
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	상법368조4	○		
(3) 영업보고서의 승인	상법447조2	○		
(4) 재무제표의 승인	상법447조	○		
(5) 정관의 변경	상법433조	○		
(6) 자본금의 감소	상법438조	○		
(7) 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회사의 계속 등	상법360조2	○		
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	상법374조	○		
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	상법374조	○		
(10)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	상법382조	○		
(11)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	상법417조	○		
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	상법400조	○		
(13) 현금,주식,현물 배당 결정	상법462조	○		
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	상법340조2	○		
(15) 이사·감사의 보수	상법388조 상법415조	○		
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	상법542조9	○		
(17) 법정준비금의 감액	상법461조2	○		
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중요 사항	중요 사항	○		
<b>2.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</b>				
(1) 중요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	중요 사항	○		
(2) 자금 차입, 공시/신고 관련 사항 (별표2)	유가증권 공시규정7조	○		
(3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	상법389조	○		
(4) 임원의 선임 및 해임	중요 사항		○	

부의안건 및 보고사항	관련 근거	위임여부		
		사전 승인	위임	보고
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	상법393조2	○		
(6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	상법393조2	○		
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	상법393조2	○		
(8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	지배구조원 평가지침		○	
(9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	상법393조1항	○		
(10)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건		○		
(11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	지배구조원 평가지침	○		
(12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 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	상법360조9 外	○		
(13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	상법526조3항	○		
(14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	상법393조1항	○		
(15) 이사회규정, 임원에 대한 보상 결정 및 규정의 제·개정 등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·개정 및 폐지	중요 사항	○		
<b>3. 이사 등에 관한 사항</b>				
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	상법398조	○		
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	상법397조2	○		
(3)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계 타회사 임원의 겸임	상법397조1항	○		
<b>4. 기타</b>				
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와 관한 사항	중요 사항	○		
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	상법340조3	○		
(3) 기타 법령,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중요 사항	○		
<b>5. 보고 사항</b>				
(1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	상법393조2			○
(2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	상법391조2 제2항			○
(3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	외부감사법8조			○
(4)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	상법542조13			○
(5) 경영계획 및 재무실적	중요 사항			○
(6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	중요 사항			○



[별표2]

## 자금차입, 공시/신고사항

-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,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.

자금차입, 공시/신고사항	위임여부		
	사전승인	위임	보고
<b>1. 자금차입</b>			
(1) 운영자금(은행, CP 발행, 보험사등)의 조달 및 연장		○	
(2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	○		
(3) 기타 상장사 공시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	○		
(4) 제반 자금행위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	○		
<b>2. 공시/신고 관련 사항</b>			
(1)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 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판매(공급) 계약의 체결 및 해지		○	
(2)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 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, 제품에 대한 수거·파기, 공장의 생산 중단 또는 폐업되거나 해당 상황의 해소	○		
(3) 증자 또는 감자	○		
(4) 주식의 소각	○		
(5)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(신탁계약 등의 체결,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)	○		
(6) 주식분할 또는 병합(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)	○		
(7)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	○		
(8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 (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)의 발행	○		
(9)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 상장폐지	○		
(10) 주권 상장폐지	○		
(1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	○		
(12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	○		

자금차입, 공시/신고사항	위임여부		
	사전승인	위임	보고
(13)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	○		
(14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	○		
(15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	○		
(16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	○		
(17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	○		
(18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	○		
(19) 주식배당, 현금·현물배당(분기배당, 중간배당 포함)	○		
(20)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이전	○		
(21) 영업양수도(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, 합병(간이합병, 소규모합병 포함), 분할(물적 분할 포함)	○		
(22) 회생절차 또는 채권은행 관리 절차의 개시·종결·폐지 신청, 파산신청 및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	○		
(23)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(사업목적 변경, 사외이사의 선임·해임, 감사의 선임·해임 등)	○		
<b>3. 공정거래위원회 공시(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정 제4조)</b>			
(1)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기자본(별도기준) 5%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, 유가증권, 자산거래	○		
(2) 분기 매출, 매입 거래 합계액을 기준으로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20% 이상을 출자한 회사 또는 그 자회사(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상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)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회사를 위하여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	○		